

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

1. 관련근거

- 가.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, 동법 시행규칙 제4조
- 나. 의료자원정책과-9260(2018.6.29.) "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"
- 다.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2018-371(2018.09.18.) "서면심의 결과 보고"

2.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관련 협·학회에서는 수련병원(기관), 소속 회원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전공의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공의가 휴가(연차휴가, 병가, 공가, 경조사 휴가, 포상휴가를 모두 포함하며, 출산휴가는 2회째부터 포함)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(1년 기간)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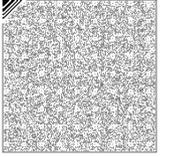
※ 위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, 그 이전까지는 "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"의 "1개월"에 연차휴가는 미포함하며, 그 외 휴가는 포함

-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전체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함. 다만,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함.

- 한편, 전공의의 연차휴가 외 휴가(병가, 공가, 경조사 휴가, 포상휴가, 출산휴가)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, 진료과장(또는 부서장) 및 수련 교육부서의 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함.

※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(질의응답) 참조

붙임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수련 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학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

주무관 **정진경** 보건사무관 **권근용** 의료자원정책 **전길** 2018. 10. 4.
과장 **곽순현**

협조자

시행 의료자원정책과-13566 (2018. 10. 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60 팩스번호 044-202-3925 / jinkyong4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